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5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- 가. 「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므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통일시키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변경조문 적용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존속기한 삭제 및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(부칙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상의 일부 용어 변경

## 3. 개정근거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- 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 및 부칙

## 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1. 7. 28 ~ 8. 17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1. 08. 18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라 하고,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규정 및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와”로 하며,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함은”을 ““통합관리기금”이란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여유자금”이라함은 구”를 ““여유자금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당해 회계연도 내”를 “해당 회계연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구금고”라함은”을 ““구금고”란”으로 하고, “「지방채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기금운용관”이라함은”을 ““기금운용관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“통합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”을 “존속기한은 5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과 동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조례 제621호 부칙 중 “하되,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”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와 ---</u> ----- ----- <u>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-----</u>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-----</u>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여유자금”이라함은 구가 설치·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구금고”라함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.</li> </ol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통합관리기금”이란 -----</li> <li>2. “여유자금”이란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-----</u> ----- <u>해당 회계연도-----</u></li> <li>3. “구금고”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-----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4. “기금운용관”이라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 운용관을 말한다.</p>	<p>4. “기금운용관”이란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)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.</p>	<p>제3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-----</p>
<p>제5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---- ----- ---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----- 존속기한은 5년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8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등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등) ① 제7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과 동법 시행령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7조(준용) ----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----- -----</p>